V 시사점 및 제언

본장에서는 제도 시행에 따른 영향분석 결과와 보험회사 성과지표의 변화를 고려하여 향후 과제를 제안해보고자 한다.

1. 자율규제 강화

보험회사가 스스로 정한 기준에 따라 보험부채를 평가하는 IFRS17이 올해부터 시행되었으나 회사별 가정 적용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되어 최근 금융당국이 계리적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제도 시행 초기 보험회사가 자의적인 계리적 가정 사용으로 인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금융당국은 신제도지원 실무협의체를 통해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39]

과거 감독회계는 규정 중심의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일반회계(IFRS)에서 준용하였으나 이제는 감독회계도 원칙 중심으로 변화하여 할인율, 위험조정만 기준이 제시되고 계리적 가정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 다만, 비교가능성을 위해 경제적 가정인 할인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직접 제공하며 위험조정은 신뢰수준 75% 이상이라는 최소 기준을 제시하였다.[40]

한편, 우리보다 앞서 원칙 중심의 책임준비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해외 국가를 살펴보면 회사의 자율성은 존중하나 계리적 가정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영국의 규제기관인 재무보고위원회(Financial Reporting Council; FRC, 이하 'FRC'라 함)는 계리표준위원회 구성 및 계리표준 제정, 계리감독자포럼 개최, 계리전문기관 감독 등

39)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3. 5. 31),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40) 노건엽(2022a)

계리가정 체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프로세스를 마련하였다.

FRC는 영국 회사법(Company act)[41]에 근거하여 법정 감사를 할 수 있으며 감독당국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1990년 설립되어 회계 및 재무보고에 대한 감사,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업무를 수행하며 2016년 이후 감사(Audit)에 대한 관계당국(Competent authority)으로 되었다.

〈그림 V-1〉 영국 FRC 업무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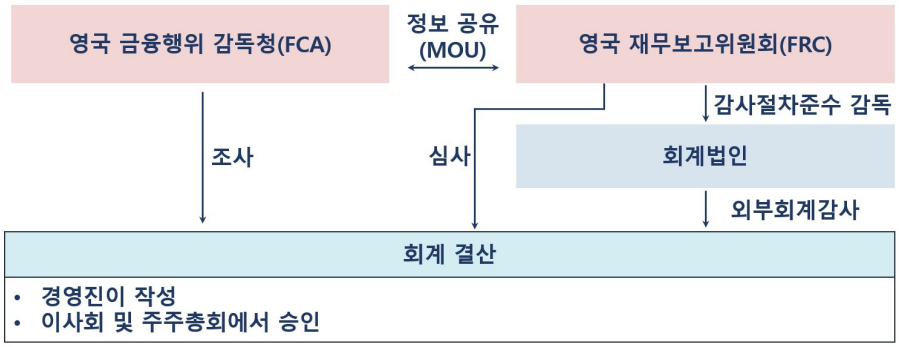

자료: 이영한(2021)

영국은 2000년 말 Equitable life[42]의 파산 이후 보험계리에 대한 전문성 개발, 계리사 역할 설정, 고품질의 전문적이고 윤리적 기준 설정, 공익 보호 의무 등을 위해 규제 개혁을 폭넓게 추진하였다. 영국 재무부의 연구용역[43] 결과에 따라 계리규제에 대한 독립적인 감독 체계 수립, 계리표준위원회 구성, 기술적 및 윤리적 기준 준수에 대한 감독, 계리 교육 및 전문성 개발 등 보험계리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 체계를 개선하였다.

계리 가정 규제 체계로서 ① 계리사 스스로의 자율규제 ② 감독당국의 직접 규제 ③ 독립기관이 감독하는 자율 규제를 검토하였으며 이 중 ③이 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계리사 스스로의 자율규제는 공공의 이익 보호나 대중의 신뢰를 얻기가 어려우며, 감독당국에

41) Regulation 3(a) The Statutory Auditors and Third Country Auditors Regulations 2016

42) Equitable life는 1762년에 설립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생명보험회사이며 보험계리사(Actuary)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회사였으나 1980년대 판매한 고금리계약으로 인해 2000년 말 지급불능상황이 되어 신계약 판매 중지, 계약 이전 등이 이루어졌으며 2020년 1월 Utmost Life and Pensions의 자회사가 됨

43) HM treasury(2005)

의한 법적 규제는 명확성과 일관성을 제공할 수 있으나 혁신과 계리 전문성 발전을 더디게 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한편, 계리사를 규제하는 별도 기관 설립에는 계리사 수 대비 비용이 많이 발생하므로 기존 규제기관 중 성격이 유사한 FRC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FRC는 재무제표 심사,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 및 공인회계사회에 대한 감독업무를 주로 하였으나 2006년부터 보험계리 감독업무도 같이 수행한다. 계리표준위원회(Actuarial Standard Board; ASB, 이하 'ASB'라 함) 구성 및 계리표준(Technical Actuarial Standard)을 제정하고 금융행위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 이하 'FCA'라 함), 건전성감독청(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PRA, 이하 'PRA'라 함), 연금감독자, 계리사회 등이 참가하는 계리감독자포럼(Joint Forum on Actuarial Regulation; JFAR, 이하 'JFAR'이라 함) 주관 및 계리전문기관인 계리사회(Institute and Faculty of Actuaries; IFoA, 이하 'IFoA'라 함)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한다. 이러한 계리 감독은 IFoA와 업무협약(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MOU'라 함)에 의해 진행된다.[44] FRC의 계리표준 작성, 계리사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 및 징계, 계리사회에 대한 감독 등은 계리사회와 협약에 의해 진행된다.

〈그림 V-2〉 영국 재무보고위원회(FRC)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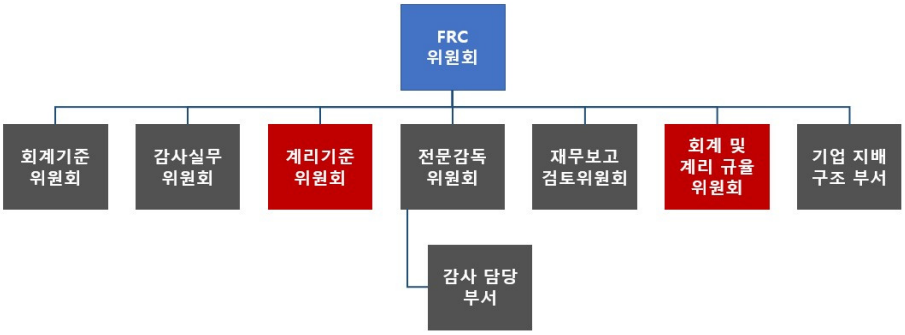

주: 계리 감독 업무가 포함된 당시 조직이며 현재는 조직 체계가 변경됨
자료: Paul George(2012)

캐나다는 계리전문직 감독위원회(Actuarial Profession Oversight Board; APOB, 이하 'APOB'라 함)에서 계리실무표준 제정 및 계리사를 관리하며 계리실무에 대해 필요시 감독

44) FRC(2022)

당국이 변경하거나 지침을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캐나다에서는 이미 1970년대부터 계리적 판단에 의한 가정의 신뢰성 문제가 논의되어 1980년대 이후 평가 기술 보고서(Valuation technique papers), 교육노트(Educational note) 등을 통해 실무표준이 정착되었다.[45)]

계리적 가정의 규제는 APOB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며 예하에 ASB와 전문성 및 자격 모니터링 위원회(Professionalism and Credential Monitoring Board; PCMB, 이하 'PCMB'라 함) 등으로 조직되어 있다.

이러한 캐나다의 제도는 영국의 계리 개혁정책을 받아들인 것으로 2007년 계리표준감독위원회(Actuarial Standards Oversight Council; ASOC, 이하 'ASOC'라 함)와 ASB를 설립하였으며 2020년 ASOC의 역할을 확대하여 APOB를 설립하였다. APOB는 계리사 이익보다 공익을 우선하여 15명의 위원 중 계리사는 3명으로 제한하고 학계, 법조계, 감독당국 등 계리사 외 전문직으로 구성되며 계리사회(Canadian Institute of Actuaries; CIA, 이하 'CIA'라 함)로부터 재정적 지원은 받지만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ASB는 계리 표준 설정 프로세스의 지시 및 관리하고 계리 실무표준을 채택한다. PCMB는 계리사회의 전문성 개발 표준 설정 및 모니터링 프로세스를 지시 및 관리하고 직업 행동 규칙에 대한 해석 제공, 전문성과 공익성 관점에서 계리사 자격 요건 및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의견과 조언을 제공한다. 한편 보험회사법에 근거하여 감독당국이 계리실무를 변경하거나 추가적인 지침을 요구할 수 있다.[46)]

해외 사례를 통해서 보면 계리적 가정은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수행하면서 공공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기 위해 별도 규제당국 또는 독립된 위원회를 활용하여 실무표준을 제정하고 보험계리사의 전문성 개발과 직업 윤리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영국은 FRC에서, 캐나다인 경우 APOB에서 계리 가정 체계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며 보험계리사의 전문성 개발 및 윤리 기준 등에 대한 교육과 모니터링을 한다. 한편, 계리실무상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독당국이 위원회에 참여하거나 계리적 실무 개입을 위한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고 있다.

국내는 보험회사 자율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부채평가에 대한 회계정

45) Pelletier and Dave(2019)

46) Insurance Companies Act, SC 1991, 365.(2)

책서, 계리방법서를 작성해야 하고 선임계리사가 자체적으로 검증하고 계리법인을 통해 외부전문가가 또 한 번 검증하는 프로세스를 마련하였다.

회계정책서는 책임준비금 산출함에 있어 보험회사가 선택한 회계정책 및 해당 정책의 선택 근거를 상세히 기술해야 하며, 계리방법서에서는 최선추정, 위험조정, 보험계약마진 등 평가시 적용한 방법을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한편, 회사 자체의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선임계리사의 업무 범위가 확대되고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보장하였으며[47] 독립계리업자 또는 보험요율산출기관을 통한 외부 검증을 의무화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한다.[48]

〈그림 V-3〉 보험부채 검증 프로세스

자료: 노건엽·조영현·이승주(2023)

다만, 보험산업의 공통 기준이 정립되지 않고 보험회사의 자율과 내·외부 전문가에 의한 검증 위주이므로 투자자, 보험계약자 등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 사례와 유사하게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이 고려된 위원회 구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위원회를 통해 계리실무표준을 제정하고 심의 및 의결을 수행할 수 있으며 계리 업무에 대한 전문성 향상과 직업윤리에 대한 기준 설정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원회는 보험계리사 외에도 학계 및 감독당국 등이 참여하여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대한 법적 위치 부여와 감독당국의 승인절차 등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47) 보험업법 제181조(보험계리), 제181조의 2(선임계리사의 임면 등)
48)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의 2(책임준비금 적정성 검증)

지금도 다양한 기관을 통해 자율적인 규제가 이루어지나 일관되고 체계화된 관리를 위해 독립된 위원회를 활용하여 프로세스 확립과 계리적 가정에 대한 여러 기준들이 제시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계리실무표준과 관련된 기관을 살펴보면 한국계리학회는 보험계리 실무표준의 작성 및 관리 등을 수행[49]하며, 한국보험계리사회는 한국계리실무기준 제정[50], 윤리기준 배포, 계리보고서 제정,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실무매뉴얼 작성 등의 사업을 진행하였다.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선임계리사 협의회는 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 실무표준을 작성하고 있으며 보험개발원은 계리적 가정(해지율, 손해율 등)을 산출하고 보증준비금 및 부채적정성평가 실무표준을 작성하였다.[51] IFRS4에서는 3개의 계리실무표준(보증준비금, 부채적정성평가, 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이 존재하였으나 현재는 선임계리사 협의회에 의한 '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만 유지되고 있다.

국내에서 독립된 위원회를 통한 자율 규제 강화를 위해서는 신규로 기관을 설립하거나 기존 기관 및 단체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신규 기관 설립은 계리적 가정 프로세스에 대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법적 기반 마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운영을 위한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기존 기관 및 단체 활용 방안은 MOU 체결 등을 통해 운영을 위한 인적·물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으나 이해관계자 간 이견으로 인해 이를 조율하기 위한 시간과 노력이 적지 않게 투여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위원회는 효율성과 전문성에 기반할 필요가 있으며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서에 대한 구성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할인율 산출방법 개선

3장에서 국내 보험회사 자본 및 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원인 중 하나로 할인율을 제시하였다.

---

49) 한국계리학회 정관 제3조(사업) 제2항

50) 한국보험계리사회 보도자료(2021. 11. 8), "한국계리실무기준(KSAP) 제4호 및 IFRS17 계리적 가정 실무기준 제정"

51) 보험개발원(2018)

IFRS17 할인율은 무위험수익률 곡선의 모습을 나타내나 무위험수익률인 국고채 수익률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최종관찰만기를 설정하고 최종관찰만기까지 수익률에 유동성 프리미엄을 추가한다. 또한 최종관찰만기(20년)부터 만기 60년 시점의 장기선도금리에 수렴하도록 보간법을 적용한다. 따라서 최종관찰만기 기간, 유동성프리미엄 수준, 장기선도금리 수준, 보간방법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할인율 수준이 달라진다.

현재 최종관찰만기는 20년, 2023년 3월 말 유동성 프리미엄 0.9%, 장기선도금리 4.80%를 적용하고 있다.

〈그림 V-4〉 할인율 도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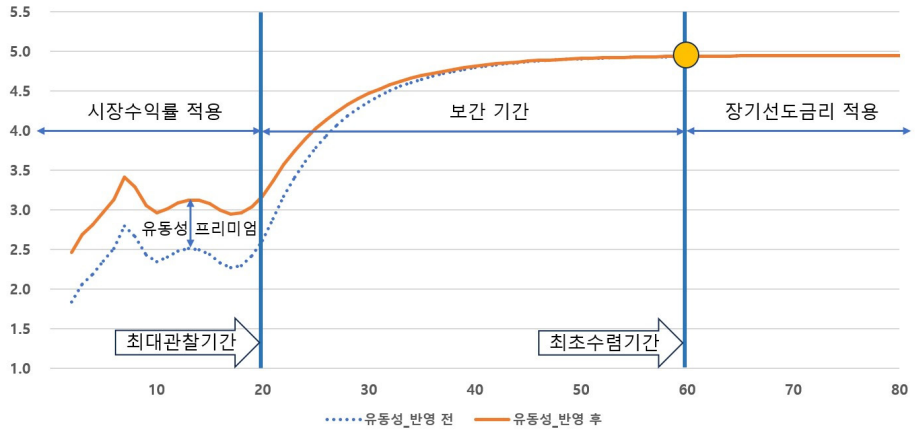

자료: 노건엽(2022b)

국내 IFRS17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유럽의 보험감독당국인 EIOPA가 제시한 할인율에 비해 만기별로 최대 1.5%p 이상 차이가 발생한다. 유럽의 보험회사들은 IFRS17 평가 시 감독당국이 제시한 할인율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렇게 높은 할인율은 보험회사 자본 및 이익, 신계약 가치 등을 왜곡시켜 보험회사가 건전한 성장을 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

〈그림 V-5〉 할인율 비교(Solvency Ⅱ, 국내 IFRS17)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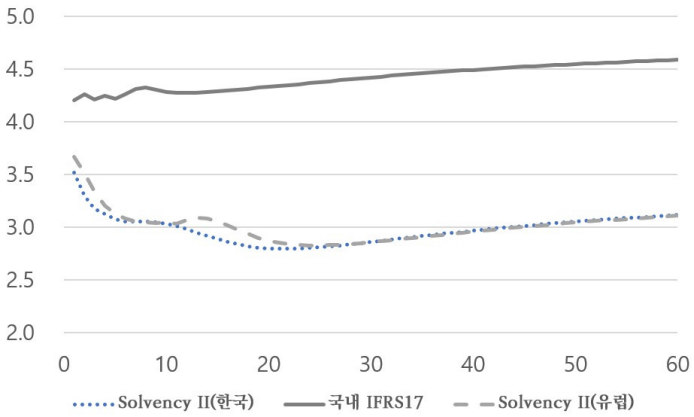

자료: EIOPA 및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유럽의 경우 Solvency Ⅱ 도입 전에는 높은 할인율을 유지하였으나 제도 도입 후에는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시켰다. 이로 인해 2017년 4.2%였던 장기선도금리는 2023년 현재 3.45%가 되었다. 또한 EIOPA(2019)를 통해 부채 과소평가 등을 방지하기 위한 할인율 산출방법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림 V-6〉 장기선도금리 추이(Solvency Ⅱ)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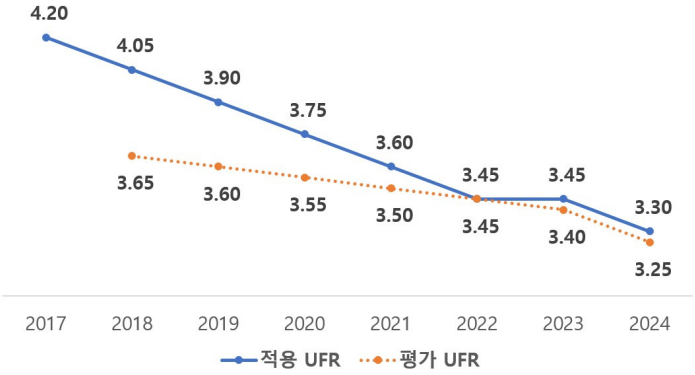

자료: EIOPA 홈페이지

캐나다의 경우도 IFRS17 도입시점의 장기선도금리(4.0%)가 높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 이자율 산출 시 최근 데이터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지수평활법을 적용하기로 변경하고 데이터 사용기간(30개년, 25개년, 20개년)별 영향분석을 통해 '25개년'으로 결정하여 장기선도금리를 4.0%에서 3.65%로 인하하였다.[52)]

국내는 저금리 시대가 지속되면서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회사의 의견을 수용한 할인율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할인율은 새로운 제도에 대한 원활한 도입을 위해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연구되고 가장 체계적으로 운영되었다. 2011년 부채적정성평가 및 보증준비금의 이자율 시나리오로 시작하여 IFRS4 2단계 논문 작성, 계량영향평가(Quantitative Impact Study; QIS), 연구용역, TF, 할인율 운영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제도개선이 꾸준히 이루어졌다.

〈그림 V-7〉 할인율 제도 개선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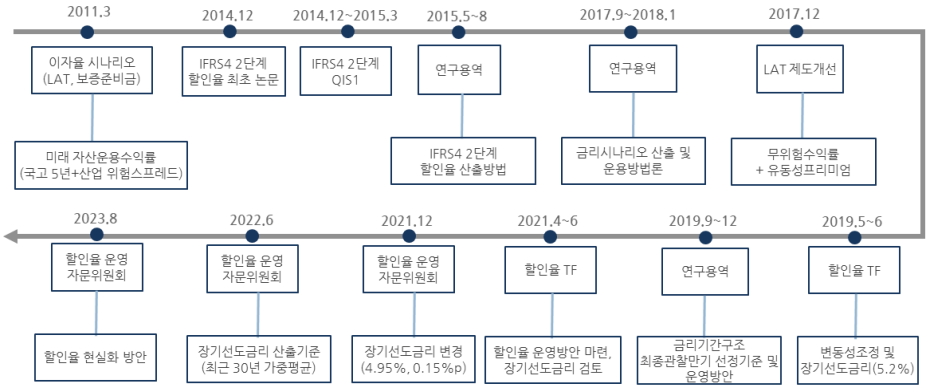

자료: 노건엽(2023)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도입된 지금은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2023년 4.80%를 적용하는 장기선도금리는 좀 더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최종관찰만기, 유동성 프리미엄, 외삽법 등 할인율 산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감독당국은 할인율 단계적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53)] 2024년의 장기선도금리는

52) CIA(2021)
53) 금융감독원(2023a)

4.55%로 2023년보다 0.25%p 인하되었으며 유동성프리미엄은 일부 항목(개인대출, 특수금융)에 대한 산출방식을 변경하였다. 최종관찰만기는 만기 20년에서 만기 30년으로 2025년부터 변경할 예정이다. 또한 유동성 프리미엄의 조정비율(변동성조정 적용비율)과 신용위험스프레드 산출방식은 각각 2026년과 2027년 시행을 예고하여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조정비율과 신용위험스프레드 산출방식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아 이에 대한 검토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검토는 2026년에 새롭게 개정될 것으로 예고된 유럽의 지급여력제도 Solvency Ⅱ 개정안[54]을 참고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Ⅴ-8〉 할인율 단계적 적용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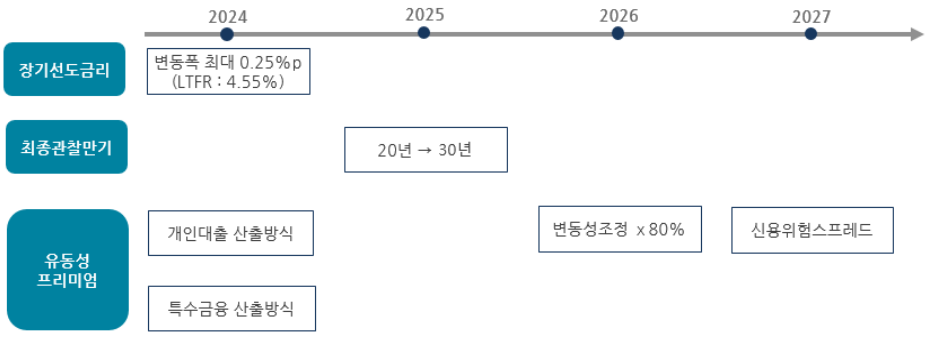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2023a)을 재정리함

3. 맺음말

2023년, IFRS17과 IFRS9의 도입으로 보험산업은 황금기를 맞이하였다. 자본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이익은 1분기만에 전년 이익의 대부분을 달성하였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회사별 재무제표 비교, 보험부채 대비 보험계약마진 비중을 살펴보고 회사별 전환방법 차이를 알아보았다. 또한 회사별 예실차 비율과 보험계약마진상각률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54) EIOPA(2020)

한편, 우리와 동일하게 IFRS17을 시작한 유럽의 보험회사는 이러한 변화를 보여주지 않는다. 유럽 보험회사는 2016년부터 시행한 Solvency Ⅱ로 인해 부채 시가평가에 대한 경험이 존재하여 할인율 및 계리적 가정을 Solvency Ⅱ와 거의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즉 건전성회계제도에서 축적된 경험을 일반회계제도에 반영한 것이다. 반면 국내 보험회사는 일반회계제도와 건전성제도가 동시에 도입되어 제도 변화의 모습을 충분히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IFRS9 시행에 따른 투자이익 증가 효과와 IFRS17 평가 시 높은 할인율 수준이 적용됨과 동시에 감독회계의 신계약비 제도 변화도 함께 이루어져 자본과 이익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보험회사의 자본과 이익 증가는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성 문제로 확산되었다. IFRS17 시행 초기 보험회사가 자의적인 계리적 가정을 사용하는 등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금융감독당국은 계리적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를 고려하여 회사별 비교가능성과 외부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자율규제 방안을 제시하였고, 할인율 현실화를 위한 산출방법 개선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또한, 제도 변화에 따른 보험회사 성과지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존 내재가치 방식 대신 보험계약마진을 활용한 방안에 대한 해외 사례를 제시하고 국내 적용방안을 논의하였다.

기존에 사용된 내재가치 방법에서 보험계약마진(CSM)이 성과지표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의 경우 생명 및 건강보험은 성장성과 수익성 지표로 보험계약마진을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국내도 상품 수익성분석 지표로 보험계약마진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보험회사 IR에서 신계약 CSM 증가율 및 보유계약 CSM 규모 등을 제시하고 있어 보험계약마진이 보험회사 성과지표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국내는 할인율이 해외 제도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고, 기존에 사용된 내재가치 방법과 달리 보험계약마진은 보험위험만 고려하여 산출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무제표상 보험계약마진의 직접적인 사용보다는 일정 부분 조정하여 산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할인율에 대한 하향조정과 더불어 보험위험뿐만 아니라 금리위험 및 신용위험 등을 반영한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성과지표는 보험회사의 판매전략, 신상품 개발, 보험금지급심사 등 전 영역에 걸쳐 영향을 미치므로 제도 변화의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기보다 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장이 가능한 방향으로 변화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제도 도입 전 사전공시자료와 제도 도입 이후 1분기 재무제표자료만으로 분석되어 제한된 기간과 제한된 자료로 인해 현상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존재하므로 향후 실적을 추가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분석을 최초로 시도하고 그에 따른 보험회사의 성과지표를 논의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